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06
----------	-------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신현영 · 이소영 · 김민철
김정호 · 이수진 · 이학영
윤미향 · 정태호 · 이상현
허숙정 · 고영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복지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고려사항에 해당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삶의 질 향상을”을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생활안정”을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u>삶의 질 향상</u> 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 ----- ----- ----- ----- ~~삶의~~ <u>질 향상과 건강 보호를</u>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u>생활안정</u> 에 관한 사항	2. ----- <u>생활안정과 재산</u> <u>형성</u> -----
3. <u>근로자의 재산형성</u> 에 관한 사항	3. <u>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u> 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